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2년 08월 29일

약수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이 *례	이 *례 1952-08-20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8길 (신당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08-17
이 *례	심 *연 1975-06-16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8길 (신당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08-17